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64

2017년 3월 3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정태 의원 외 10명

나. 발 의 일 : 2016년 12월 2일

다. 회 부 일 : 2016년 12월 5일

라. 상 정 일 : 제272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2월 27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정태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있으나 심의사항에 광장 내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광장 내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의 건립·이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광장 내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16. 12. 8. ~ 12. 15)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광장 내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의 건립·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장의 조형물 등 건립에 공공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제3조(관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광장 내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에 관한 사항(신설)** 4.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2017년 현재, 광장별 동상 및 부속 조형물 현황은 청계광장에 스프링(SPRING), 광화문광장에 이순신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등이 있으며, 건립 절차는 다음과 같음.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 건립 현황>

광 장	조형물명	영구/임시	건 립 일	비 고
청계광장	SPRING	영구	2006. 9. 29	
서울광장	-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영구	1968. 4. 27	
	세종대왕 동상	영구	2009. 10. 9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 동상 및 조형물 등 건립 절차[1)]>

1. 건립주체가 시장에게 건립신청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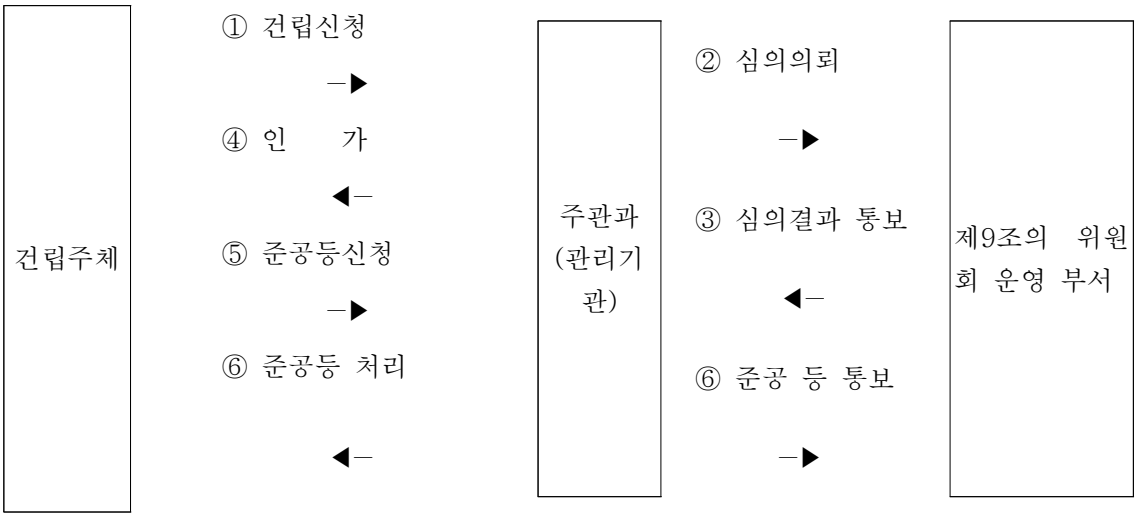

2. 건립주체가 사업소장, 산하 공단, 자치구청장에게 건립신청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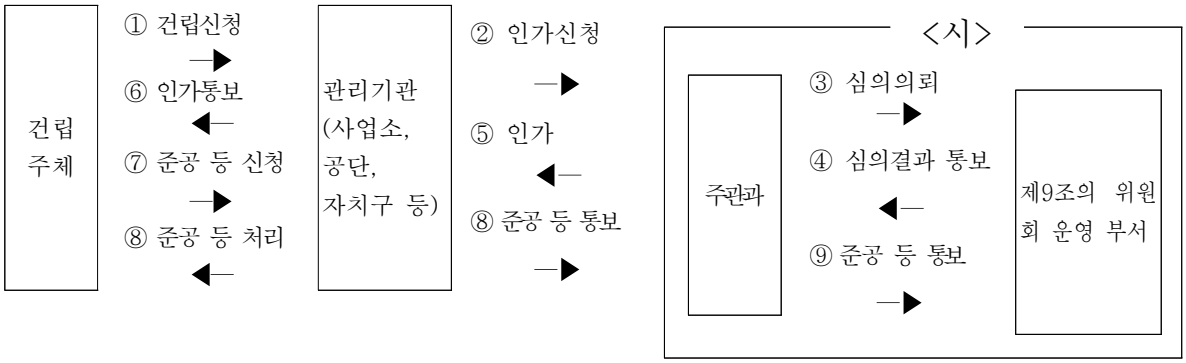

다만, 건립계획서를 접수한 시 주관과는 건립 예정장소와 여건을 고려하여 건립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되 **소규모 등의 사유로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뢰를 생략할 수 있음.**

○ 최근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영구 설치 및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등 논란이 있었는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광장에 조형물 등의 신규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등의 광장 조성취지가 공원과 달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의사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조형물 조성에 따른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약되지 않도록 조형물 등의 설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1)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별표

- 또한, 개정안의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은 그 정의와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성탄 트리, 홍보 조형물 등 임시 조형물을 포함한 모든 조형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임시, 기타 조형물까지 포함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과 광장 조성 본래의 취지에 맞게 조형물 건립 등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 측면을 감안하여 조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형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부속 조형물’을 ‘조형물’로 하고, 건립·이전 뿐만 아니라 교체·해체 등의 사항도 명시함(안 제3조제3호).

○ 위원회 구성 인원 중 서울특별시의원을 4명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3항제3호).

8.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564

제안년월일 : 2017년 2월 27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조형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부속 조형물’을 ‘조형물’로 하고, 건립·이전 뿐만 아니라 교체·해체 등의 사항도 명시함(안 제3조제3호).

○ 위원회 구성 인원 중 서울특별시의원을 4명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3항제3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호 중 “부속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에 관한 사항”을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교체·해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제3호 중 “의원 2명”을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생략) <신 설> 3. (생략)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생략) 3. 광장 내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광장 내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교체·해체 등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장 내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교체·해체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제3호 중 “의원 2명”을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및 기능)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3조(설치 및 기능) 1. ~ 2. (현행과 같음) **3. 광장 내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